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19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06일

발 의 자: 이용균, 김성준, 김영철,
김용일, 김춘곤, 박영한,
박철성, 서준오, 성흠제,
송도호, 아이수루, 유정인,
, 유정희, 윤종복, 이병도,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임만균, 최재란,
한·신, 홍국표 의원(23
명)

1. 제안이유

- 2015. 7. 30.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에서는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부지에서 공동주택 건축이 허용되는 산업부지 확보 비율을 개정하였으나, 개정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음.
- 이에 따른 조례 적용 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정규정의 시행(2015. 7. 30.) 전 결정된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15 7. 30.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 5981호)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함.
- 나. 조례의 시행(2015. 7. 30.) 이전에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포함하여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의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적용하도록 함.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598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 을 삽입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산업부지 확보비율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의 공동주택 건축 허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산업부지 확보비율이 포함되어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598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 계획이 고시된 사업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981호, 201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981호, 2015.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조(산업부지 확보비율에 따른 준공 업지역 내 공장부지의 공동주택 건 축 허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산업부지 확보비 율이 포함되어 정비계획 또는 지구 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p>